

공민왕대 초반 군주권 재구축 시도와 奇氏一家 : 1356년(공민왕 5) 개혁을 중심으로

이 명 미*

1. 머리말
2. 奇氏一家와 고려·고려왕실
3. 1356년 개혁과 고려군주권
4. 맺음말

1. 머리말

13-14세기, 몽골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고려군주권은 상당부분 손상되고 약화되었다. 공민왕대는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조용하면서 이렇게 손상, 약화된 고려군주권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더불어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체편을 추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민왕의 시도는 일반적으로 ‘반원개혁’이라 일컬어지는, 1356년(공민왕 5)에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개혁은 그것이 당시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갖는 획기적인 의미로 인해 그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20세기 초, 일본인 학자인 池内宏에 의한 것으로 그는 元明교체기를 맞아 원의 국세가 약화한 틈을 타 부원세력을 제거하고 이루어낸 공민왕의 원에 대한 ‘반향운동’으로 이 개혁을 평가한 바 있다.¹⁾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專論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 개혁에 대해 다루어왔으며 최근에는 ‘재검토’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1356년의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부분 밝혀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원

1) 池内宏, 1917 「高麗恭愍王の元に對する反抗の運動」 『東洋學報』7-1, 東洋學術協會(『滿鮮史研究』中世, 1979,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다만 기존논의들을 통해서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개혁의 발단 혹은 동기 및 지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1356년 개혁을 포함한 공민왕 초의 여러 조치들이 군주권의 안정, 재구축과 관련된 됴은 통설적 이해와 ‘재검토’ 논의들이 공히 언급하는 바로서 일면 당연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군주권 구축을 위한 공민왕의 정치행위는 이전 시기 고려국왕들의 군주권 구축이 몽골(원) 황제의 권위를 기반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도발적’인 방식으로, 혹은 ‘반원적 지향’을 가지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통설적 이해는 대체로 그러한 개혁 과정이 보여주는 ‘도발성’의 배경을 공민왕 즉위 전부터 존재해 왔던 ‘반원·자주적 역사의식’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³⁾ 최근 제기된 ‘재검토’ 논의들은 이 개혁의 ‘반원적 지향’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지만⁴⁾ 공민왕 초의 몇몇 정책들을 포함, 1356년의 개혁에서 나타난 조치들이 기존 고려-몽골(원)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도발적’인 행위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단, 그러한 ‘도발성’이 공민왕 즉위 전부터 공민왕과 고려사회에 존재해왔던 ‘반원·자주의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 2) 민현구, 1981 「고려 공민왕의 즉위배경」 『한우근박사정년기념 사학논총』; 민현구, 1989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 배경과 발단」 『진단학보』68; 민현구, 1992 「고려 공민왕대 반원적 개혁정치의 전개과정」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민현구, 1994 「고려 공민왕대의 ‘주기철공신’에 대한 검토 : 반원적 개혁정치의 주도세력」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上); 홍영의, 1990 「공민왕 초기 개혁정치와 정치세력의 추이 : 元年5년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상)-(하)」 『사학연구』42, 43-44, 한국사학회; 이익주, 1996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당택, 1995 「원간섭기말의 반원적 분위기와 고려정치사의 전개」 『역사학보』146; 김순자, 2007 「한국중세한중관계사」, 해안 외 다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토’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록, 2007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이강한, 2009(a) 「공민왕 5년(1356) ‘반원 개혁’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65; 최중석, 2010(c) 「1356(공민왕 5)~1369년(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재검토 : ‘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116.
- 3) 민현구, 위의 논문(1989); 김당택, 위의 논문(1995) 외 다수. 특히 1356년 개혁과 관련한 통설적 이해의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민현구는 이 개혁의 배경과 관련, 중국대륙의 정세변동 뿐 아니라 고려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를 강조하여 ‘반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공민왕의 즉위와 함께 국내에도 ‘반원적’ 성향을 지닌 개혁적 신료들이 성장, 결집하게 되면서 ‘자주적 역사의식과 排元의식의 확산’이라는 고려사회의 내적 발전의 결과물로서 ‘반원적 개혁정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 4) 김경록, 앞의 논문(2007); 이강한, 앞의 논문(2009(a)). 이강한은 ‘反元’, 더불어 ‘黜元’·‘附元’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 논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 온 이 개혁의 ‘반원적’ 성격을 상당부분 배제시키고 공민왕의 국정주도권 회복을 이 개혁의 주된 동기이자 지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반원’ 등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개혁을 단순히 국왕의 국정주도권 회복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고 몽골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편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또다른 편향이라 생각된다. 이강한도 직접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논의구조에서는 공민왕 초기의 상황과 1356년 개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민왕 즉위년의 癸亥(胡服) 해제, ‘반원개혁’ 당시의 至正年號 사용증지와 같은 사안들은 전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설명은 좀 더 궁구해볼 여지가 있다. 기존 논의들이 그러한 ‘반원·자주의식’ 형성의 배경으로 들고 있는 근거들, 왕위계승에의 개입을 주로 하는 원의 ‘압제’ 혹은 ‘간섭’, 역사서의 편찬과 같은 것들은 이 시기에 특징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1356년의 개혁을 포함하여 공민왕 초에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여주는 ‘도발성’ 혹은 ‘반원적 지향’이 어떤 맥락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표이며 필자는 이를 몽골제국의 질서 아래에서 고려왕실·고려군주권과 기씨일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356년 개혁의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역시 기존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개혁의 결과와 관련한 통설적 이해는 이를 통해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가 고려전기의 이른바 ‘형식적 외교관계’로 복귀함으로써 고려는 자주적 독립국이 되었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이 ‘반원적’이었고 그에 대한 원의 반응이 예상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개혁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반원’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개혁의 결과 양국관계의 양상이 일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고려전기적 질서로의 복귀’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실제 최근의 연구는 1356년의 개혁 이후에도 이른바 ‘원간섭기’에 형성되었던 외교관계의 틀이 양국간에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 이렇게 1356년 개혁 이후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함께 가졌던 고려-몽골(원) 관계는 그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몽골황제-고려국왕 간의 세력과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며 군주권 재구축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 이후 고려군주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1356년 개혁 이후 양국관계에서 보이는 변화와 지속의 측면이 고려군주권에 있어 갖는 각각의 함의에 대해, 그리고 온전한 군주권의 회복, 더불어 ‘반원’을 지향했지만 그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었던 공민왕대 초반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기씨일가가 처음 등장 이후 차츰 정치세력화해가는 과정과 공민왕대 초반 기씨일가의 동향을 통해 기씨일가와 고려왕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356년 개혁의 발단과 지향, 결과를 통해 이 시기 공민왕의 군주권 회복시도가 이전 시기의 그것과 차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측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5) 최중석, 앞의 논문. 이강한의 연구는 1356년 개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상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혁이 이른바 ‘세조구제’ 단계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세조구제’ 단계를 넘어서지 않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강한, 위의 논문)

2. 奇氏一家와 고려·고려왕실

1) 충혜왕대-충정왕대 奇氏一家의 등장과 성장

14세기 중반, 충혜왕대에서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奇氏一家가 고려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340년(順帝 至元 6, 충혜왕 후1) 奇子敖의 딸 奇氏가 당시 원의 황제였던 順帝의 제2황후가 되면서 부터였다.⁶⁾ 기씨의 제2황후 책립은 물론 그에 격렬히 반대했던 바얀(伯顔)의 실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더불어 여기에는 그 직전에 이루어진 태자의 출생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한편 태자의 정치적 지위 역시 그 母后의 지위와 어느정도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⁸⁾ 기황후 책립 후 태자의 지위와 관련,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기황후 책립 후 불과 2개월만인 1340년 8월, 文宗의 廟主가 철거되고 그의 황후인 부다시리(卜答失里) 황후와 그의 아들 황태자 엘투쿠스(燕帖古思)가 축출, 살해되었다.⁹⁾ 順帝의 태자로는 쿡크라트 출신 바얀쿠투(伯顔忽都) 황후 소생으로 친김(眞金)과 雪山 등이 확인되지만 아직은 모두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엘투쿠스 축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당시로서는 기황후 소생의 태자 아유르시리다라(愛猷識理達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별해서 볼 때 前代 황제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아 次代 황제위에 오르게 한 사례가 武宗-仁宗代부터 시작해서 順帝代 직전까지 나뉘도록 순조롭게 이루어져왔던 상황,¹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順帝 즉위 후 7년이나 지난 시점이며 기씨의 제2황후 책립 직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상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기황후의 의도와 관련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¹¹⁾ 이것이

6) 奇氏는 고려에서 몽골로 간 공녀 출신으로 禿滿迭兒의 천거로 순제의 차시중을 들게 되면서 총애를 받아 1335년 순제의 제1황후인 다나시리(答納失里) 황후가 그 父 엘테무르(燕鐵木兒)의 謀逆事件에 연루되어 살해당한 후 바얀쿠투 황후에 이어 제2황후가 되었다. 『元史』卷114, 列傳1, 后妃1, 完者忽都皇后.

7) 기황후 所生子 아유르시리다라는 1338년(순제 지원 4년) 혹은 1339년에 태어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범, 1962 「奇皇后의 冊立과 元代の 資政院」 『역사학보』17·18, 495-496면 참조.

8) 몽골제국에서 母后의 출신, 지위에 따라 그의 所生子가 부여받는 지위에 차이가 있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라시드 엇딘 저(김호동 역), 2003 『칭기스칸기』, 사계절, 92·115-116면 등)

9) 『元史』卷40, 順帝 至元 6年 6月 丙申.

10) 당시 몽골 황제위 계승상황과 황태자 전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2010 「奇皇后세력의 恭愍王 폐위 시도와 高麗國王權 : 奇三寶奴 元子 책봉의 의미」 『역사학보』206, 6면 참조.

11) 이용범은 이 사건을 奇皇后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범, 앞의 논문, 475-486면) 한편 이때 축출된 엘투쿠스는 고려로 유배가던 중 심양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가 문종의 아들이며 문종 즉위 후 토곤테무르(순제)가 유배되었던 지역이 고려였던 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황후의 출신이 고려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과 기황후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순제와 그 측근들의 정치행위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 혹은 욕구가 내재해있다가 구체적 사건으로 표출될 수 있었던 것에는 기황후 책립과 그가 낳은 태자의 존재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황후의 책립과 태자의 존재는 고려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충혜왕은 1340년 3월, 원에 대한 聖節使로 기황후의 오빠인 奇轍을 보냈다.¹²⁾ 기황후 책립 소식이 고려에 전해진 것은 같은 해 4월이지만 이 문제는 오랜 논란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만큼 이미 고려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숙왕 사후 바얀의 반대로 원으로부터 국왕위계승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바얀의 실각과 함께 국왕위계승을 인정받게 된 충혜왕은 기철을 사신으로 보냄으로써 ‘고려’와 ‘몽골(원)’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40년 경, 안축과 이세현은 각기 「請同色目表」와 「乞比色目表」¹³⁾를 통해 고려인을 ‘色目’과 같이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몽골제국기를 거치면서 유독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인데 이들은 모두 황태자가 태어난 직후, ①고려가 원에 큰 功을 세웠다는 점, ②충렬왕이 쿠빌라이의 친딸과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는 점, ③(고려출신 황후로부터) 황태자가 태어났다는 점을 들어 ‘請同(乞比)色目’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세 가지 가운데 ①과 ②는 왕씨고려왕실과 몽골황실 사이의 관계로 이미 오래전부터 성립되어 있었던 사안들이다. 이에 비해 ③은 기씨일가와 몽골황실의 관계로 ‘請同(乞比)色目’의 요구가 있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請同(乞比)色目’과 같은 요구가 유독 이때에 와서 두 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請同(乞比)色目’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무엇이었던 간에¹⁴⁾ 그간 고려왕실-왕씨일가가 몽골에 세운 功과 몽골황실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제 황후와 태자를 통해서, 그를 배출한 기씨일가와 몽골황실의 ‘관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안축과 이세현이, 고려 신료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몽골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고려-고려인의 입장에서 몽골황실과 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기씨일가의 고려-몽골(원) 관계에서의 역할 혹은 의미가 왕씨일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혹은 적어도 그에 못지않다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⁵⁾ 한편 기황후의 아버지인 奇子敖의 行狀이¹⁶⁾

12) 『高麗史』卷36 忠惠王 後元年 3月 戊寅.

13) 『謹齋先生集』卷2, 「請同色目表」 『韓國文集叢刊』卷2 수록, 『益齋亂藁』卷8, 「乞比色目表」.

14) 이들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색목’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두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191-192면; 김호동, 2008 「高麗 後期 ‘色目人論’ 背景과 意義」 『역사학보』200 참조.

李穀에 의해 쓰여지고 있음은 이시기 고려 臣民들의 기씨일가에 대한 인식이 딱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가 아닌가 한다.

기황후의 책봉과 함께 황후의 재정담당기구로서 資政院이 만들어졌으며 기황후가 이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형성, 강화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¹⁷⁾ 이와 함께 고려 내에서도 기씨일가는 점차 그 세력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충혜왕대 이후 기씨일가와 관련하여 사료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례들은 기황후의 세력을 등에 업은 기씨일가 구성원의 고려내 횡포, 혹은 고려국왕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려 내에서 기씨일가가 정치세력화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1341년(충혜왕 2), 奇輪과 충혜왕은 충혜왕이 田子由의 처이자 기씨의 친척인 이씨를 강간한 사건, 이어 기륜이 田麻頗와 함께 내료를 구타하자 충혜왕이 악소배를 기륜의 집으로 보내 전마과를 수색한 사건 등을 통해 상호 갈등·대립했다.¹⁸⁾ 2년 후인 1343년(충혜왕 4)에는 기철이 李芸, 曹益淸 등과 함께 立省論을 제기하여¹⁹⁾ 다시한번 충혜왕과 대립하고 있다. 이 양자는 기륜 단계에서 갈등의 외화 혹은 해결의 방식이 서로간의 폭행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기철 단계에 이르면 갈등의 해결방식이 개인적인 횡포 혹은 폭행을 넘어 정치행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갈등의 발단은 개인적인 것에 있을 수 있지만²⁰⁾ 기철 등이 입성론을 제기한 근거 역시 기륜 단계에서처럼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왕이 탐음하고 부도”하니 “백성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보다 공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였다. 또한 이운, 조익청, 기철 간에 어떤 혈연적인 관계나 사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어느정도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입성론은 그 주장대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충혜왕 폐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철 등의 입성론의 이후 2개월 만에 고룡보 등이 고려에 왔고 다음 달에 충혜왕 폐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양자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충혜왕이 폐위된 후 원에서 보내 온 조서에는 충혜왕의 방자하고 무도한 행위를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 서울에 와서 호소”했기 때문에 그를 귀양보낸다고 하여 기철 등의 입성론이 충혜왕

15) 이명미, 앞의 논문, 24-26면 참조.

16) 李穀, 『稼亭集』卷2, 「高麗國承奉郎奇公(奇子敷)行狀」.

17) 이용범, 앞의 논문.

18)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 2年 11月, 12月.

19)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 4年 8月.

20) 민현구, 앞의 논문(1989), 60면.

폐위의 발단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²¹⁾

충목왕 즉위 후 기씨일가 및 그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다시 한단계 성장하고 있다.²²⁾ 충목왕 즉위 후 이루어진 정치도감의 개혁은 그 과정에서 기씨일가의 인물인 기삼만이 옥사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 정동행성이문소의 비판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²³⁾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때 정동행성이문소의 정치도감 공격은 당시 기씨일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정동행성, 특히 이문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철이 몽골제국기 내내 거의 공직이었던 정동행성 참지정사직에 고려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임명되었으며 충목왕 사후 왕후와 함께 권정동행성사를 맡고 있음을 통해서도 당시 정동행성이 기씨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기씨일가의 움직임은 이전 입성론 단계와는 또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정쟁의 배후에 ‘기철’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정쟁의 과정에서 ‘기철’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을 매개로 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철 혹은 기씨일가의 고려내 정치적 입지가 보다 구조화하여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하겠다.

충정왕대 고려 내 기씨일가의 활동은 사료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목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기씨일가는 고려의 우수한 가문들과의 통혼을 통해 ‘귀족화’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충정왕대에 기철의 딸이 王煦의 아들 王重貴와 혼인했으며²⁶⁾ 이에 앞서 기철의 조카 奇仁傑은 이세현의 손녀와 혼인했다.²⁷⁾ 한편 충정왕에 밀려 고려국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王祺(이후 공민왕)는 충정왕 즉위 후 고려국왕위에 오르기 위한 일련의

21)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 5年 4月 乙酉.

22) 이러한 점은 우선 충혜왕 폐위와 충목왕 즉위의 과정에 기씨 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충혜왕 폐위 직전에 기철 등의 입성론이 제기된 점, 충혜왕 폐위의 조서를 갖고 고려에 온 교룡보가 기황후 세력인 점, 나아가 충혜왕 폐위 후 교룡보가 어린 충목왕을 안고 순제에게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충혜왕 폐위와 충목왕 즉위의 과정에 기씨 일가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 (『高麗史』卷36, 忠惠王 4年 10月 壬戌; 卷37, 忠惠王 5年 2月 丁未)

23) 정치도감과 관련해서는 민현구, 1980 『整治都監의 性格』 『동방학지』23:24; 이강한, 2008 『정치도감(整治都監) 운영의 제약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67; 신은제, 2009 『14세기 전반 원의 정국동향과 고려의 정치도감』 『한국중세사연구』26 외 다수.

24) 이강한, 위의 논문.

25) 민현구, 앞의 논문(1981), 803-804면.

26) 『高麗史』卷110, 王煦 附 王重貴.

27) 민현구, 앞의 논문(1981), 803-804면.

준비를 행했다. 대표적으로 노국공주와의 통혼, 황태자의 端本堂에의 입시 등을 들 수 있는데 몽골제국이 고려군주권의 중요한 배경이었던 공주와의 통혼과 함께, 황태자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때의 황태자는 기황후의 아들인데 공민왕이 즉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의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 기황후 세력의 고려 정치에의 영향력이 고려국왕위 계승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음과 함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즉위한 공민왕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기씨일가와 고려왕실·고려군주권의 구조적 갈등관계의 발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민왕대 초기 奇氏一家의 동향

기황후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공민왕이 즉위한 후,²⁸⁾ 사료상 기씨일가의 전횡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공민왕이 聖節을 축하하기 위해 행성으로 가는데 奇轍이 공민왕과 말을 나란히 세워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려 했다거나²⁹⁾ 몽골에서 공민왕에게 공신 칭호를 주었을 때 당시 요양성 평장정사로서 요양에 있다가 잠시 고려로 들어왔던 기철이 왕에게 보낸 축사에서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거나³⁰⁾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씨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공민왕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전횡 사례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행동에 대한 사료의 서술은 기씨일가 주살을 주로 하는 1356년의 개혁에 앞서 그들의 ‘하극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행동이 하극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철이 공민왕에 대해 稱臣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관직체계상에서의 현실적인 양자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356년 당시 기철은 요양행성 평장정사로서 고려 내에서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기철의 행위는 사실상의 ‘하극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고려인은 곧 고려국왕의 臣民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철이 이전에 정동행성 참지정사직에 임명된 바 있고 고려에서 정승직을 받기도 했음을 고려한다면 고려국왕 및 여타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1356년 기철의 행동은 정서상의 ‘하극상’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철의 행위가 현실적인 관직체계상의 양자관계, 그리고 기씨일가와 고려왕실(공민왕)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은 기철 등의 그러한 ‘하극상 아닌 하극상’에 대해

28) 공민왕의 즉위과정에서의 기씨일가의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민현구, 위의 논문, 803-804면 참조.

29)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元年 4月.

30)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5年 2月; 『高麗史』卷131, 奇轍.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민왕의 군주로서의 상징적 권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물론 기철 등 기씨일가 이전에도 황제의 신하로서 고려국왕에 대해 臣禮를 취하지 않았던 ‘부원배’들은 있었다.³¹⁾ 그러나 공민왕이 즉위과정에서 기황후 측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 공민왕의 고려국왕위가 상당부분 다른 고려 출신 가문인 기씨일가의 힘과 권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득세는 단순한 ‘부원배’ 차원을 넘어 공민왕의 군주권을 제약하고 있었다.

기씨일가의 전횡이 공민왕의 국정주도권을 상당부분 제약하고 있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지만, 당시의 고려-몽골 관계에서 기씨일가의 존재가 고려와 고려왕실에게, 구체적으로 즉위초의 공민왕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궁구해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은 단지 황후의 일가로서 고려에서 전횡하며 국왕의 국정주도권을 위협하는 존재만은 아니었다. 몽골은 다른 정치집단과 관계를 맺을 때 국가대 국가로서, 혹은 부족대 부족으로서 정치적으로 결합한 측면과 함께 대상 정치집단의 수령적 지도자가 속한 ‘가문’과 가문 대 가문으로서 관계를 형성한 측면도 강하게 보인다.³²⁾ 지배 가문과의 정치적 결합을 통해 그의 통치를 받는 정치집단을 제국 질서에 통합시키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몽골황실의 통혼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³⁾ 몽골황실은 오이라트, 쿵크라트, 이키레스 등 특정 姻族과 반복적인 통혼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들 부족 출신 누구나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통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당 부족 가운데에서도 특정 가문의 인물들이 몽골황실의 배우자격을 얻고 있을 뿐이었다.

몽골과 고려의 관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고려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는 보다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몽골황실-쿠빌라이가와 고려왕실-王氏一家 사이에 성립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몽골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31) 대표적으로 1271년(원종 12) “홍다구가 詔書를 가져와 왕을 보고도 拜禮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겠다. (『高麗史』卷130, 洪福源)

32) David Sneath는 부족사회에서의 정치 메커니즘과 관련, 부족, 혹은 씨족들은 전체가 하나의 혈연집단이라기보다는 상층의 몇몇 ‘family’들만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아래는 단지 정치, 경제적 이익을 함께하는 집단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ruling family’들간의 관계로 부족사회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David Sneath, 2007, *The headless state : aristocratic orders, kinship society, & misrepresentations of nomadic inner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이 글에서는 爵位·官位를 상속·유지하는 부계혈연집단이자 정치세력이라는 의미로 ‘family’를 대신하여 ‘가문’, ‘일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몽골-고려 관계사에서 ‘가문’, 혹은 ‘가족적 관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김호동, 2009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109, 160면 각주 48; 이명미, 앞의 논문(2010).

33) 몽골에 있어 이러한 타 집단과의 통혼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결합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려왕실과의 통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하나가 고려왕실과 몽골황실간의 지속적인 통혼관계이다. 이러한 통혼을 통해 고려국왕은 부마로서 몽골제국의 질서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물론 양자의 관계는 각기 자신이 통치하는 정치단위를 대표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다. 다만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주체이자 핵심이 몽골황실과 고려왕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통혼에도 반영되어 고려에서 몽골황실의 통혼대상은 고려왕실에 한정되었으며 왕실 이외 유력가문 인물과의 통혼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혼관계의 유지는 양국·양가문간의 관계가 부침,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나아가 몽골이 고려와의 관계에서 선택한 가문이 왕씨일가였음을, 고려 내에서 몽골황실과 그 권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존재가 왕씨일가였음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 양자간의 통혼관계였다. 이러한 점은 고려군주권을 실질적으로 몽골 황제권 아래에 둬으로써 그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역으로 무신집권기 이후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던 군주권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고려국왕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³⁵⁾ 그런 점에서, 기황후의 등장과 태자의 출생은 고려의 왕씨일가와 몽골황실 간에 성립, 유지되었던 양국관계의 구도에 또 하나의 가문이 끼어 들어온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³⁶⁾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의 군주권은 고려내에서조차 유일한 최고권으로서의 권위를 위협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황제와의 ‘관계’는 기씨일가가 고려왕실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기씨일가의 등장은 이미 ‘배타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정치단위의 대표가문과 몽골황실의 정치적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등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34)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35) 몽골황실과 고려왕실 간 최초의 통혼사례인 세자 왕십(이후 충렬왕)의 통혼성립 과정에서 세자가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임연에 의해 원종이 폐립된 상황에서 몽골황실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그 권위를 기반으로 신료들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성준, 1958 『麗代 元公主出身王妃의 정치적 위치에 대하여』 『한국여성문화논총』; 김혜원, 1989 『麗元王室通婚의 성립과 특징』 『이대사원』 24·25 호 외 다수)

36) 몽골제국 초기의 사례이긴 하지만 쿵크라트의 사례는 몽골이 다른 정치집단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가문’ 단위의 인식, 더불어 이 시기 몽골황실과 기씨일가, 고려왕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쿵크라트는 몽골황실의 대표적 姻族이었지만 실제 몽골황실과 지속적인 통혼을 한 것은 그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문, 데이세첸(特薛禪) 계열이었다. 하지만 칭기스칸대 몽골과 쿵크라트가 정치적 관계를 형성할 당시 쿵크라트 本族은 테르게 에멜이라는 인물의 휘하에 있었고 데이세첸은 그와는 구별되는 보스쿠르씨(몽골어로 ‘배반자’)의 수령이었다. 처음 테르게 에멜이 칭기스칸에게 항복했을 때 칭기스칸은 딸을 주겠다고 했으나 테르게 에멜이 이를 거절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후 쿵크라트 내에서 ‘배반자’였던 데이세첸의 후손들은 칭기스칸가와의 지속적 통혼을 통해 쿵크라트 전체의 지배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 쿵크라트와 몽골의 초기 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라시드 언던 저, (김호동 역), 2002, 『부족지』 사계절, 267-268면; 村上正二 講註, 1970 『モンゴル秘史』1, 平凡社, 319면; 『モンゴル秘史』2, 154면; 『金史』 卷93, 宗浩; 이명미, 앞의 논문(2010), 19-21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이후 공민왕 폐위사건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³⁷⁾

한편, 공민왕대 초기 기씨일가의 동향과 관련, 더불어 1356년 개혁의 배경으로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는 기존의 연구들이 1356년 개혁의 주요 배경으로서 들고 있는 톡토(脫脫)의 실각 문제이며, 다른 한가지는 개혁 이후 공민왕이 대내외적으로 ‘개혁(기씨주살)’의 배경으로 들고 있는 ‘기철의 난’ 문제이다.

먼저 톡토의 실각문제를 살펴보자. 기존 연구들은 1354년, 톡토가 高郵城의 張士誠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실각한 소식이 원정에 참여했던 고려군에 의해 고려에 전해졌고 이를 통해 몽골(원)의 세력약화를 확인한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실행했다고 이해해왔다.³⁸⁾ 물론 당시 몽골(원)의 세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고 톡토의 실각 소식은 이를 보다 분명히 공민왕이 인식하도록 해주었을 것이며 이것이 이후 공민왕의 개혁 실행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몽골(원)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반원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방식의 이해는 곤란하다. 공민왕이 톡토의 실각에서 단지 몽골(원)의 쇠락만을 감지하고 개혁을 감행했다고 하기에 그의 개혁은 무모했다. 그러한 모험을 감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몽골(원)의 쇠락을 톡토의 실각이 내포할 수 있었을까?³⁹⁾ 톡토의 실각이 고려에 전해준 몽골(원)의 쇠퇴상이 공민왕이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정세적 배경을 형성해 주었음은 분명하지만 실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절실한 무엇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개혁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공민왕이 雙城의 千戶 李子春을 회유하고 있는 1355년 12월이다.⁴⁰⁾ 하지만 기존 연구들도 언급했다시피⁴¹⁾ 후술할 정지상의 일화는 이미 1355년 초반부터 공민왕과 개혁주도세력들 사이에서 개혁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단계라 하더라도 톡토 실각 소식이 전해진 1354년 11월 이후 개혁에 대

37) 이명미, 앞의 논문(2010).

38) 민현구, 앞의 논문(1989), 65-66면, 68면 외 다수.

39) 톡토의 실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몽골의 쇠퇴상을 공민왕이 이른바 ‘반원개혁’을 시도해도 좋을 정도로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후 결국 몽골이 막북으로 몰려나게 된다는 결과에 기반한, 상당히 결과론적인 해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한 연구는 順帝代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David M. Robinson,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18-21.

40) 『高麗史』卷38, 恭愍王 4年 12月 時歲.

41) 민현구, 앞의 논문(1989), 68-69면.

한 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원 조정에서 특토의 정치적 존재의 미는 무엇이며 그의 실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공민왕은 특토의 실각에서 어떤 의미를 읽고 이후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혁을 구상했을까?

특토의 실각은 그에 원한을 품은 哈麻가 기황후에게 황태자 冊寶 문제로 참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⁴²⁾ 그런데 이는 ‘참소’는 아니었다. 특토는 기황후 및 황태자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⁴³⁾ 유독 황태자 책보 문제에 대해서는 쿵크라트 正宮의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한편, 1354년 실각 이전, 1344년 이미 한차례 베르케부카(別兒怯不花)에 의해 실각했다가 1349년 복권했을 당시, 특토는 中書에 들어가 그 “恩怨을 갚는” 과정에서 베르케부카 외에도 그와 형제를 맺고 가까이 지냈다는 10명의 인물 가운데 한명인 禿滿迭兒를 中書右丞에서 四川右丞으로 좌천시킨 후 다시 무고하여 추방하고 도중에서 죽이고 있는데⁴⁴⁾ 이 禿滿迭兒는 처음 기황후를 순제의 공녀로 추천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禿滿迭兒가 기황후를 존재하게 한 인물임을 생각한다면 양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특토와 기황후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특토가 복권 후 “은원을 갚는” 과정에서, 그리고 황태자의 책보문제와 관련하여 갈등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갈등이 정치적 입장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황후의 존재(禿滿迭兒), 황태자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당시 공민왕에게 특토의 실각은 단순히 몽골(원)의 세력약화를 알려주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특히 황태자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기황후와 황태자의 세력 강화에 대한 예고로서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상황에서 기황후 및 황태자의 지위 격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고려, 특히 공민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실제 특토의 실각 이듬해인 1355년 3월 황태자의 고명이 이루어졌고 특토 파면에 앞장섰던 哈麻와 그 동생 雪雪의 활약도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⁴⁵⁾ 급기야 1356년 정월에는 황태자에 대한 내선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내선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를 주도했던 哈麻, 雪雪 등이 파직되었다.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42) 『元史』卷205, 列傳92, 姦臣, 哈麻.

43) 황태자 아유르시르다라가 6살이 될 때까지 특토의 집에서 자랐다 하며 그 기간 중 순제가 전쟁이 나간 사이 위협에 처했을 때 특토가 황태자를 안고 單騎로 산에 올라 그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일화도 있다. 1344년 실각 후 1349년 다시 복권할 때에도 특토는 東宮의 일을 맡아보는 것으로 재기하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황태자가 공부했던 단본당의 일도 담당했다(『元史』卷138, 列傳25, 脫脫).

44) 『元史』卷205, 列傳92, 姦臣, 哈麻.

45) 雪雪의 활약은 황태자의 단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특토의 실각이 고려에 전해졌던 시기는 고려내에서 기씨일가의 입지가 매우 강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1352년(공민왕 원년), 조일신은 기씨형제를 죽이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가 伏誅되었다.⁴⁶⁾ 이 난의 배후에 공민왕이 개입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씨일가의 고려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공민왕의 입지가 약화되었음은 어느정도 분명해 보인다.⁴⁷⁾ 이 사건 이후 공민왕은 직접 기황후의 모친인 영안왕부인 이씨의 집을 찾아갔으며 그를 위해 원에 직접 요청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잔치에서의 자리배치문제이다. 잔치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두 사례, 1353년과 1355년의 잔치이다.⁴⁸⁾ 1353년의 잔치에서는 몽골의 태자와 노국공주가 南面, 왕은 東面, 이씨는 西面하여 앉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잔치의 주인이 이씨였기 때문에 그가 주인으로서 西面했으며 공민왕이 그에 대해 東面하여 서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355년의 잔치에서는 공주나 태자는 보이지 않고 왕과 이씨가 함께 南面하여 앉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리배치의 양상은 기황후의 모친인 이씨가 공민왕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의례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이는 앞서 살펴본 공민왕 초 기철 등의 '하극상 아닌 하극상'이 공민왕의 군주권에 대해 갖는 의미를 재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기철의 난 문제를 살펴보자. 이와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기철의 난이 실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⁴⁹⁾ 대체적으로 공민왕이 원의 허락없이 기황후의 일족을 주살한 것에 대한 변명의 차원에서 만들어낸 언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⁰⁾ 이때의 역모가 실재했는지의 여부, 실재했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된 단편적인 기사들을 근거로 공민왕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기철의 난과 관련된 최초의 기사는 개혁이 단행되기 직전인 1356년 3월, 이자춘이 공민왕을 조

46) 『高麗史』卷38, 恭愍王 元年 9月에서 同年 10月 乙巳까지.

47) 민현구, 앞의 논문(1989), 61-64면; 이익주, 1995 『공민왕대 개혁의 추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 현실』15, 30-31면 외 다수.

48)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2年 8月(이는 『高麗史』卷131, 奇轍(傳)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됨); 『高麗史』卷38, 恭愍王 4年 8月.

49) 최근의 한 연구는 기철세력이 동서북면 지역에 대해 갖고 있었던 지역적 연고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반역 모의가 실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다.(이강한, 앞의 논문(2009(a)), 214-215면.) 그는 기철의 반역모의가 실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또하나의 근거로서 당시의 묘지명 기사에 '기씨의 난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다.(김용선, 2001 『柳淑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下),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50) 池內宏, 앞의 논문(1917); 민현구, 앞의 논문(1989).

회했을 당시 “기철이 쌍성의 반란민과 몰래 통해 당을 만들고 역모를 꾸민다”고 밀고한 자가 있어 왕이 이자춘에게 돌아가 백성을 진무하고 혹 변란이 일어나면 명령에 따르라했다는 기사이다.⁵¹⁾ 이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혹은 그런 가능성을 공민왕이 강하게 의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밀고’가 제기된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 동서북면 지역에 대해 기철 세력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⁵²⁾ 그 시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철을 비롯한 기씨일가의 공민왕의 군주권에 대한 ‘하극상 아닌 하극상’이 계속되고 고려내에서의 기씨일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전해진 기철의 역모에 대한 ‘밀고’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일단 공민왕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³⁾ 이에 특토 실각 이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를 주시하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던 공민왕은 ‘기철의 난’이라는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기철의 난과 관련한 ‘밀고’가 있는 이후 공민왕이 이자춘에게 ‘밀명’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황이 없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시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시일이 지난 후 ‘무고’임이 확인되었으나 이후의 상황전개상 그를 표면화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3월의 기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은 1356년 7월, 몽골(원)에 대해 이른바 ‘반원개혁’과 관련한 고려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⁵⁴⁾ 이보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이 개혁과 관련, 고려 신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서가 반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철의 전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의 역모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⁵⁵⁾ 이러한 기사의 잔존 상황은 기존 연구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기철의 난에 대한 공민왕의 언급이 일종의 언설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로써 볼 때 단언할 수는 없지만 1356년 개혁의 과정에서 기철의 난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356년 3월의 ‘밀고’는 그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무고’

51)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5年 3月.

52) 김구진, 1989 『麗·元の 영토분쟁과 그 귀속문제 : 원대에 있어서 고려본토와 동녕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의 분리정책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7; 민현구, 앞의 논문(1989); 이강현, 앞의 논문(2009(a)).

53) 더욱이 공민왕은 기철 등이 제기한 입성논의의 여파로 충혜왕이 폐위되었음을 목도한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 초 기씨일가의 정치적 입지는 충혜왕대의 그것에 비해 더한층 강화된 상황이었으므로 기철의 난 소식이 공민왕에게 주었을 압박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4) 『高麗史』卷39, 恭愍王 5年 7月 戊申.

55) 『高麗史』卷39, 恭愍王 5年 6月.

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밀고’는 공민왕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며 이에 다소 우발적으로 개혁이 단행된 후 아직 ‘밀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무고’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변명’을 요구하는 몽골(원)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민왕은 3월의 ‘밀고’ 혹은 ‘무고’를 활용했던 것이다.

3. 1356년 개혁과 고려군주권

1) 개혁의 발단과 지향-몽골帝國下 奇氏一家와 고려군주권

1356년 개혁의 발단 및 지향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점은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변으로부터 발단된 이 변혁은 고려사회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반원자주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것은 이미 고려사회의 저류에 흐르고 있던 반원의식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⁵⁶⁾라는 민현구의 서술을 통해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민왕이 즉위 이전 장기간의 숙위생활을 통해 원의 쇠퇴상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2차례에 걸친 왕위계승 실패 경험 등을 통해 ‘반원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고려 내에서도 고려가 원의 壓制下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이 성장하여 역사가가 자주 편찬되고 자주적 역사의식이 고양되었으며 이것이 1356년 개혁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⁵⁷⁾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공민왕이 ‘반원의식’을 갖게 되었을 배경으로 들고 있는 원의 고려국왕위 계승에의 개입문제를 비롯한 몽골(원)의 ‘간섭’ 혹은 ‘압제’는 몽골 제국기 동안 상존했던 문제로 이 시기에 특징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역사서 편찬 역시 이미 충렬왕대부터 이루어져왔던 것이었으므로 공민왕이 몽골제국기 다른 고려국왕들과 달리 특별히 ‘반원·자주적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충분한 배경이 되기는 어렵다. 물론 공민왕을 포함한 몽골제국기의 고려국왕들이 고려·고려군주

56) 민현구, 1994 「고려 공민왕대의 ‘주기철공신’에 대한 검토 : 반원적 개혁정치의 주도세력」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上), 929면.

57) 민현구, 앞의 논문(1989), 51-52면. 김당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즉위 이전 공민왕의 ‘반원적 성향’이나 고려의 ‘반원적 분위기’를 원의 고려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분명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당택, 1995 「원간섭기말의 반원적 분위기와 고려정치사의 전개」 『역사학보』146)

권에 대한 몽골의 ‘간섭’ 혹은 ‘압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그에 짝하여 이른바 ‘자주적 역사의식’이 형성되어 왔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전의 고려국왕들이 그러한 ‘불만’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음에 비해 공민왕은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논의들은 그러한 양자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전시기와 차별화된 공민왕대의 특징적 배경으로 몽골(원)의 쇠퇴라는 국제적인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공민왕이 그의 ‘반원의식’을 구체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 마음껏 표출해도 좋을 만큼의 쇠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56년의 개혁 이전, 이미 공민왕은 즉위 원년에 변발·호복을 해제하고⁵⁸⁾ 즉위 교서에서 태조 및 종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⁵⁹⁾ 다소 몽골(원)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표면적으로 ‘반원적’ 혹은 ‘자주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물론 고려국왕 및 고려신민들이 그간의 몽골(원)의 지배에 대해 가졌던 불만 혹은 반감, 그리고 이 시기 역사서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던 이른바 ‘자주적 역사의식’의 고양이라는 분위기는 공민왕의 행위들에 이념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즉위초 아직 불안했던 공민왕의 군주권의 기반을 고려할 때 그것을 단순히 공민왕에, 혹은 고려사회에 내재해 있던 ‘반원의식’ 혹은 ‘자주적 역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출로서, 혹은 그러한 의식의 표출 자체를 위해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몽골(원)의 세력이 약화되었음은 사실이지만 공민왕은 여전히 몽골(원), 그리고 기황후 세력의 지원에 의해 고려국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은 기존 왕위중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공민왕이 즉위 직후 연이어 충혜왕의 서자인 釋器를 절에 보내고⁶⁰⁾ 충정왕을 유배지에서 독살한 것은⁶¹⁾ 공민왕 스스로 몽골(원)에 의해 다시 폐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씨일가의 동향에서 보듯이 고려 내 몽골(원) 세력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고려 내부에서도 일반신료들의 몽골(원)에 대한 인식은 공민왕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며⁶²⁾

58)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元年 正月.

59) 『高麗史』卷38, 恭愍王 元年 2月 丙子.

60) 『高麗史』卷38, 恭愍王 즉위년 12月 辛卯.

61) 『高麗史』卷38, 恭愍王 元年 3月 辛亥.

62) 최연식, 1995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15; 이리주, 앞의 논문(1996), 226-228면.

이러한 차이는 1356년 개혁의 과정에서 일반신료층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⁶³⁾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대 초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의 배경을 몽골(원)의 압제에 대응하여 형성된, 일체화한 고려사회의 강고한 ‘반원·자주적 역사의식’에서 찾는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당시인들의 지향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세적 차원에서 ‘관념적인 반원’ 분위기의 존재와 그것이 공민왕대 초반 일련의 정치행위들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정하더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도발적인 정치행위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적인 요인, 특히 이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공민왕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민왕은 즉위 후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라는 이연종의 조언을 받아들여 충렬왕대 이후 고려국왕들이 유지해왔던 변발과 호복을 벗었다.⁶⁴⁾ 변발과 호복이 “선왕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변발·호복 해제의 표면상 이유임을 볼 때 기존연구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자주적 역사의식’ 내지는 ‘반원의식’이 이 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서 즉위 직후의 공민왕이 원을 도발할 수도 있는 행위를 감행한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⁶⁵⁾ 공민왕의 이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 혹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고려국왕들에게 변발과 호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의 유지를 통해 그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

63) 1356년의 개혁은 공민왕의 측근세력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민현구, 앞의 논문(1994); 이익주, 앞의 논문(1996))

64) 『高麗史節要』 卷26, 恭愍王 元年 正月.

65) 변발·호복 해제의 의미와 관련, 이익주는 그것을 이른바 ‘세조구제’ 안에서 보장되었던 고려의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여 이 행위가 원의 ‘간섭’ 자체를 부정하는 전면적인 ‘반원의식’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그는 원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공민왕의 정책이 전면적인 ‘반원’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 있다.(이익주, 앞의 논문(1996)) 변발·호복 해제에서 ‘반원적’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은 최근 이강한의 논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단 그는 이익주의 논의와 달리 1356년의 개혁 전, 후 모두 공민왕이 ‘세조구제’ 단계의 양자관계를 지향했다고 보고 있다.(이강한, 앞의 논문(2009)) 물론 변발과 호복은 세조대의 양자관계에서 몽골에 의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매우 긴 시간동안 그것이 유지되면서 이는 양자관계에서 일종의 관례로 자리잡고 있었던 측면도 있다. 또한 그것은 고려왕실이 몽골의 지배체계에 ‘순응’함을 지속적으로 내외에 확인시키는 ‘표식’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변발과 호복을 이의 시행여부가 논의되었던 세조(쿠빌라이)~충렬왕 당대가 아닌, 순제-공민왕대에 이르러 즉위 직후의 공민왕이 몽골의 허락, 혹은 사전 통보도 없이 자의로 해제한 것은 ‘현재’ 양자관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역시 도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논의에서 고려-원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 ‘세조구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 이 시기 국내외의 연구자들 간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조구제’론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森平雅彦, 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北東アジア研究』 別冊1號.

피 몽골은 고려국왕에 대해 변발과 호복을 강요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 王謙(이후 충렬왕)은 몽골 공주와의 통혼을 허락받고 고려에 돌아오면서 변발과 호복을 하고 왔으며⁶⁶⁾ 신료들에게도 이를 강요했다.⁶⁷⁾ 충렬왕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쿠빌라이는 고려의 복식을 유지하도록 했지만⁶⁸⁾ 고려국왕의 변발·호복은 공민왕 즉위시까지 계속되었다. 충렬왕과 이후 고려국왕들이 ‘스스로’ 변발과 호복을 택하고 그것을 유지했던 것은 무신집권기 이후 위축되어 있던 국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특히 아버지인 원종이 무신 임연에 의해 폐립되기까지 한 상황을 몽골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 돌아오면서 신민들에 대한 국왕권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충렬왕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을 폐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무신과 그러한 상황을 묵도하고 있었던 신민들에 대해 자신이 무신의 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까지 함께 가진 몽골황제의 인정을 받은 ‘국왕’이라는 점을 한눈에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발과 호복이었다.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몽골황실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질서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상호 인지함으로써, 고려 내에서는 그 정점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국왕의 상징적 권위 역시 고려 내에서는 최고임을 지속적으로 상호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대가 되면 몽골의 권위에 기대어 군주권을 구축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기존에는 고려왕실만이 형성하고 있었던 몽골 황실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영역에 기씨일가라는 새로운 가문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들 가문의 위상은 ‘몽골의 질서’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고려왕실보다 우위에 있었다. 공민왕은 몽골의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려왕실·고려국왕의 최고권을 신민에 확인시킬 수 없는, 오히려 그를 통해 기씨일가의 우위를 강조하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공민왕의 변발·호복 해제는 충혜왕대 이후 급속히 성장해온 기씨일가의 존재, 그의 도움을 받아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공민왕의 입장에서 즉위 이후 나름대로의 군주권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한편 공민왕은 태조 및 종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위교서에서 이미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元宗 12년⁶⁹⁾ 이후로 보이지 않던 국왕의 태조진전 배알 기사가 공민왕 재위기간 동안 수차례 확인되며⁷⁰⁾

66) 『高麗史』 卷27, 元宗 13年 2月.

67) 『高麗史』 卷28, 忠烈王 즉위년 冬10月 辛酉, 甲子, 同年 12月 丁巳.

68) 『高麗史』 卷28, 忠烈王 4年 秋7月 甲申.

69) 『高麗史』 卷27, 元宗 12年 2月 戊申.

太廟에 대한 제사, 親祭기사 역시 공민왕대에 특히 더 빈번하게 보인다. 공민왕이 그의 개혁들에서 단순히 고려전기 제도로의 복구가 아니라 태조대의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⁷¹⁾ 이러한 공민왕의 행위들은 물론 일정정도 그간 고려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자주적 역사 의식’ 고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몽골제국기 이전 고려의 전통적 제도 혹은 질서가 아닌 태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몽골(원)의 지배에 대한 반발 내지는 자주성의 강조를 넘어 또다른 정치적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 이후 고려국왕·고려왕실의 권위는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왕실의 정통성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으며 태조에 대한 제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속되었다. 태조의 존재는 왕씨용손 설이나 북한에서 발견된 태조동상에서도 보이듯이 일반 백성들, 신민들에게는 단순한 國祖로서의 위상을 넘어 신성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⁷²⁾ 나아가 태조는 왕씨고려왕실의 ‘고려왕실’로서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의 기반이 되어 그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해왔던 존재이기도 했다.⁷³⁾ 이에 공민왕은 그간 고려군주권의 상당부분을 구성해온 몽골(원)의 권위에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가문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체의 질서인 태조의 권위에 기대어 군주권 재구축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공민왕의 태조·국속 강조는 국왕의 상징적 권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의 몽골(원)의 권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다.⁷⁴⁾

70) 즉위년부터 시작하여 공민왕 재위기간 동안 태조진전 배알기사는 총 8회 보인다. 이전의 국왕들도 태조진전이 있는 봉은사에 갔다는 기사는 확인되고 있다.

71) 이강현, 2009(b) 「공민왕대 관계개편의 내용 및 의미」 『역사학보』201.

72) 노명호, 2004 「高麗 太祖 王建 銅像의 流轉과 문화적 배경」 『한국사론』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3) 고려시대 국왕들이 그 군주권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종교의례였다. 고려 국왕들은 이러한 종교의례의 주재자로서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 관념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위에 존재하는 국왕의 위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등회의 경우는 그 과정에 祖眞拜謁儀式, 즉 소회행사 후 봉은사 태조진전까지 국왕이 행차하여 祖眞을 배알하는 謁祖眞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고려왕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불교의 의례인 연등회에 국조인 태조신앙을 의례의 중핵으로 설정하여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03-106면.

74) 이와 더불어 공민왕이 1356년 5월 개혁을 단행하기 직전, 普愚를 王師로 봉하고 圓融府를 설치한 후, 이어 선교종문의 절 주지에 대한 임명권을 보우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高麗史』卷39, 恭愍王 5年 4月 壬申; 5月 乙酉) 이는 공민왕이 보우를 통해 당시 난립해 있던 불교교단을 통합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군주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고자 한 시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공민왕의 태조·국속 강조와 마찬가지로, 공민왕이 그간 고려군주의 상징적 권위를 뒷받침해 온 몽골(원)의 권위 이외의 요소를 통해 군주권의 사회적 명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당시 공민왕의 문제의식 및 지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 즉위 이전부터의 전면적이고도 강고한 ‘반원의식’ 및 ‘자주적 역사의식’이 변발·호복해제 및 태조·국속 강조라는 공민왕의 행위의 ‘주요한’ 혹은 ‘유일한’ 배경이자 목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반원적 지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몽골제국 아래에서의 고려군주권은 몽골의 질서 안에서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존재했고 고려국왕 스스로도 왕실이, 국왕이 몽골황실과 형성한 ‘특별한 관계’, 고려의 여타 臣民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황실과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군주권을 구축하고 있었다.⁷⁵⁾ 그런데 기씨일가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몽골의 질서와 권위가 더 이상 고려 왕실의 (고려내) 최고권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간 고려군주권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몽골’을 배제하고 고려왕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권위에 기반하여 군주권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민왕의 행위는 ‘반원적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1356년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1356년 개혁은 공민왕의 ‘반원의식’과 고려내의 ‘자주적 역사의식’이 원의 쇠퇴라는 상황에 면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었다기 보다는, 몽골의 질서 아래에서 상대화한 군주권의 위상을 臣民들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국왕 스스로 自認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군주권을 제약하고 있었던 구체적 ‘경쟁자’인 기씨일가와 공민왕의 관계에서 ‘발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⁶⁾ 그렇지만 이 개혁의 ‘발단’이 기씨일가와 그로 인해 더욱 부각된 상대화한 고려군주권의 문제에 있었다고 해서 이 개혁의 ‘목표’도 ‘기씨일가의 제거를 통한 고려국왕권의 정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고⁷⁷⁾

75) 일례로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와 통혼 후 행성이 자신에게 보내는 공문의 서식을 부마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정해 줄 것을 청하고 있으며 이듬해에 황제가 보낸 ‘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印’ 역시 충렬왕의 요청에 따라 ‘駙馬’ 두 글자를 더한 것이었다. (『高麗史』卷29, 忠烈王 6年 11月 己酉; 同王 7年 3月 乙卯) 이러한 예들은 충렬왕이 고려 내의 신민에 대해, 그리고 몽골(원)로부터의 사신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자 몽골(원) 공주와 통혼 이후 그러한 황실과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킨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몽골제국기 공문서들이 몽골문서의 상투어인 ‘皇帝而錄總’ 즉 ‘황제의 복과 음덕을 입어서’라는 구절로 문서를 시작하고 있으며 ‘駙馬高麗國王..’ 등 몽골에서 받은 직함은 굳이 다 쓰고 있는 상황 등은 더 이상 ‘고려국왕’이 최고권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려국왕 스스로도 부족한 상징적 권위를 황제권에 기대어 보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노명호, 2000 『高麗時代의 功臣錄券과 功臣敎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학교출판부)

76)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공민왕대 이전, 혹은 공민왕대 초반에 몽골(원)에 대한 반감, 즉 ‘관념적 반원’ 분위기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공민왕의 일련의 정치행위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관념적 반원’의 분위기가 존재했다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한 ‘관념적 반원’의 분위기가 구체적인 정치행위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 고려군주권의 현실이다.

77) 이강한, 앞의 논문(2009(a)).

할 수는 없다. 몽골의 질서 아래에서 고려국왕-공민왕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급부상한 기씨일가의 존재가 몽골제국 아래에서 상대화한 고려왕실·고려군주권의 변질, 약화된 모습⁷⁸⁾ 일종의 ‘경쟁자’ 혹은 ‘상대자’로서 명확하게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고려군주권을 제약하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등장 이전에 고려군주권의 상대화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고 고려군주권을 상대화시킨 근본적인 요인은 기씨일가가 아닌 ‘몽골의 질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씨세력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몽골황실과 기씨일가의 ‘관계’는 공민왕이 손쓸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았으며 몽골의 질서 안에서 이미 상대화한 고려왕실의 권위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몽골의 질서’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공민왕 자신 뿐 아니라 그에 동참했던 신료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토의 실각이 고려에 전해진 것은 1354년 11월이었는데 다음해 2월, 전라도안렴사 鄭之祥이 원의 御香使 堃思不花를 가두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정지상은 “나라에서는 이미 기씨일당을 주멸하고 다시는 원을 섬기지 않기로 했다.”고 하여 1여년 후에 일어났던 개혁의 실제 경과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⁷⁹⁾ 사료에는 그가 “속여 말했다”고 되어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실제 정지상의 언급이 자신의 ‘추측’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혁의 준비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료가 보기에 당시 상황에서 고려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기씨일당을 주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원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혁이 단행된 후 南京의 터를 보도록 한 것⁸⁰⁾ 역시 이때 단행할, 혹은 단행한 일련의 개혁들이 몽골을 도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몽골의 공격가능성 때문이었다. 이때의 개혁들이 몽골을 도발한 것은 이것이 그간 고려와 고려군주권 위에, 그리고 그 내부에 강고하게 존재하며 기능했던 몽골의,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조치들이었기 때문이다.⁸¹⁾

78) 이에 대해서는 이명미, 앞의 논문(2010) 참조.

79)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4年 2月.

80) 『高麗史』卷39, 恭愍王 5年 6月 丁丑.

81) 대표적으로 至正年號 사용중지, 諸軍 萬戶·千戶·百戶牌 회수 조치, 쌍성총관부·동녕부에 대한 고려의 군사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 이것이 반드시 ‘반원의지’의 소산으로 원을 도발하기 위한 행위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김경록, 앞의 논문(2007); 이강한, 앞의 논문(2009(a))). 이들은 우선 지정연호 사용중지와 관련, 이것이 대내적인 정치행위일 뿐이었다고 보지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이미 몽골의 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던 고려·고려군주권을 그로부터 단절시키고 자체의 권위를 최고로 상정하려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틀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諸軍 萬戶·千戶·百戶牌

한편 공민왕의 개혁이 단지 ‘기씨일가 주살을 통한 국정주도권 회복’ 단계에 그치지 못하고 ‘반원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몽골의 질서에서 상대화한 고려왕실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공민왕의 ‘기씨일가 주살’을 몽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되며 이는 다시 순제(원 조정)와 기황후(황태자)세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순제를 중심으로 한 원 조정과 기황후세력의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⁸²⁾ 하지만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이들은 일체화한 존재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황제권을 구축하는 요소로서의 황태자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적절한 정치적 위상을 포함한 후계의 안정적 위상은 현황제권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황태자 세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는 현황제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어대상이 되며 몽골의 世祖 쿠빌라이와 친킴(이는 물론 후대 史家들의 추측이긴 하다), 고려의 충선왕과 세자 鑑의 관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쿠빌라이나 충선왕이 친킴, 왕감을 강력한 방식으로 제어,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황제권, 국왕권이 그 자체로 나름대로 확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제의 경우는 그 자체의 황제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황태자 측의 잇따른 선위시도 및 도발에도 그를 강하게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불로테무르(李羅帖木兒)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황제와 황태자가 내부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황태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황제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결국 불로테무르는 황제에 의해 주살되었다.⁸³⁾ 그런 점에서 순제와 기황후·황태자의 관계는 고려-몽골(원)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체화한 존재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공민왕의 개혁이 애초에 고려내 ‘기씨일가’만을 목표로 했다 하더라도 몽골(원)의 입장에서는 황제에 대한, 몽골(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공민왕으로서도 애초에 ‘반원’을 지향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반원’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수 조치, 고려의 군사행위의 문제 역시 이강한은 전자는 ‘만호부 운영의 혁신’을 위한 조치로, 그리고 후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연고를 가진 기철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던 상황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군사행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갖는 원에 대한 도발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이야기하는 세조대의 양국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동녕부 공격 역시 공민왕의 의사와는 무관한 臣의 개인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설명하지만 인당의 압력강 以西 3참 공격이 이루어진 후에도 공민왕이 군에서의 그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직후의 인사개편에도 그를 포함시키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6月 乙亥; 同年 7月 丁亥)

82) 이강한, 앞의 논문(2008).

83) 『元史』卷206, 列傳94, 逆臣, 李羅帖木兒.

기존 고려-몽골(원) 관계는 특히 고려군주권과 관련, 실질적인 ‘混一’⁸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고려군주권에 있어 몽골은 이전의 중국왕조들처럼 단순한 ‘외교’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고려국왕위에 대해 몽골이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고 있었던 점, 더불어 몽골제국기 고려국왕들이 그 군주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몽골의 인정, 몽골황실과의 ‘특별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에서 확인되듯이 ‘몽골’은 실제로 고려군주권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1356년의 개혁은 당시 고려와 고려군주권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황제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混一’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반원지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혁의 결과-세력의 변화, 질서의 유지

기존 연구들은 1356년의 개혁을 통해 고려-몽골(원)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이 개혁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변화했으며 공민왕의 군주권 재구축 시도 역시 상당부분 성과를 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존 연구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전기적 질서로의 복귀라고 하기는 어렵다.⁸⁵⁾ 그렇다고 해서 최근 ‘재검토’ 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개혁 이후 양국 관계를 이른바 ‘세조구제’ 단계로의 회귀라고⁸⁶⁾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필자의 견해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개혁 이후의 양국 관계는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모두 갖는다고 생각된다. 변화한 지점은 힘, 세력이며 지속된 것은 질서이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상황은 당시 고려국왕-공민왕의 군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3-14세기 고려-몽골(원)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이 시기 양국관계가 다른 시기 고려의 외교관계와 차별성을 갖는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은 군주권의 문제, 즉 몽골황제권과 고려국왕권 사이의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양국관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에 위치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몽골제국기 황제권과 고려국왕권의 관계는 그를 통해 양국관계의 성격, 혹은 그것의 변화와 지

84) ‘混一’이라는 표현은 사료상 몽골제국기 이후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고려-몽골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5) 최근 1356년 개혁 이후 양국관계의 질서를 ‘원간섭기’에 형성된 질서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최종석, 앞의 논문(2010(c)))

86) 이강한, 앞의 논문(2009(a)).

속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관계의 상황을 통해 해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왕권에 대해 황제권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강제력의 문제, 즉 상위 권력이 하위 권력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 시키는 것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 고려국왕위 중조 문제는 몽골제국기 황제권과 국왕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또 수차례 반복됨으로써 시기별 차이 혹은 지속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주목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356년 개혁 이후의 사례인 1362년 공민왕 폐위사건의 과정을 이전 시기 중조사례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1362년의 공민왕 폐위사건은 결과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이전의 중조사례들과 연속적인 측면과 변화된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이전 중조사례들과의 연속적인 측면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이 폐위가 단순히 몽골의 일방적인 결정, 시도로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몽골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도 고려전기의 형식적 외교관계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고려 역시 이러한 몽골의 결정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대응하면서도 일단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공민왕 폐위소식이 전해졌을 때 고려의 신료들이 몽골에 대해 진정서를 보내면서 국왕 유고시 또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신료가 중국에 보낸 문서형식인 ‘百官耆老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⁸⁷⁾ 아직 원 사신이 도착해 폐위사실을 전하기 전임에도 ‘백관기로서’라는 형식으로 원에 진정문을 보내고 있음은 공민왕 폐위사건이 이전 왕위교체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1356년 개혁 이후에도 양국관계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하겠다. 진정표를 가지고 몽골로 가던 이공수는 태조 원묘에 이르러 “우리 왕을 복위시키지 못하면 ...”이라 하여 공민왕 폐위를 일단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⁸⁸⁾ 이러한 점은 물론 그것이 고려-몽골(원)간 외교적 질서에서의 폐위와 복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시 고려의 신민들에게, 그리고 고려국왕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폐위소식이 전해진 후 피난이 논의될 당시, 오인택은 “홍적난리에 남쪽으로 피난했어도 능히 성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당들이었으므로 사람마다 ... 결사적으로 싸워 섬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덕흥은 홍적과 부류가 달라서 지나는 곳은 모두 그의 백성으로 될 것이니 전하가 일단 남으로

87) 김정록, 앞의 논문(2007), 213면.

88)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 12年 3月.

가면 서울 이북에서 누가 전하를 따를 것입니까? 오늘의 형편으로는 전하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상책입니다.”라 하여 왕이 직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⁸⁹⁾ 이인임 역시 “지금의 임금은 舊君이고 덕흥은 新主이다. 우둔한 백성들은 그저 편안하고 배부른 것을 즐겁게 생각할 줄만 알았지 어찌 정의와 부정의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알겠는가!”라고⁹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백성에만 한정된 상황판단은 아니었으며 이는 당시 몽골의 결정이 고려국왕권의 정당성에 대해 갖는 유효성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언급들이라 할 수 있다.⁹¹⁾

그러나 공민왕 폐위사건은 이전 중조사례들과는 다른 양상도 함께 보이고 있었다. 몽골은 공민왕의 폐위를 단행하면서 군사를 동원했다. 이는 1356년 이전 수차례 반복되었던 고려국왕 중조의 과정뿐 아니라 몽골제국 내 다른 정치단위의 수장을 교체할 때의 사례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도 몽골은 제국내의 정치단위 수장을 교체할 때 교서나 칙령을 이용할 뿐 군대를 동원한 적은 없었다.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세우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던 상황은 오히려 임연에 의해 원종이 폐립된 상황에서 세자 王禕(이후 충렬왕)에게 군대를 대동해 보냈던 상황과 유사하다. 이때 임연이 원종을 폐립한 것은 몽골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 국왕을 제압하기 위한 것, 나아가 고려와 몽골의 강화관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었다. 이에 정치적으로 제압되지 않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몽골은 군대를 동원했다. 한편 몽골(원)이 고려국왕을 교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고려가 그에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수차례 반복된 고려국왕위의 중조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려가 군사적인 대응을 준비한 적은 없었다. 이런 변화는 1362년 고려와 몽골(원)의 정치적 거리가 황제의 조서 한 통으로 고려국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서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⁹²⁾ 그 계기가 된 것은 1356년의 개혁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1356년의 개혁을 계기로 고려는 일단 몽골로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회복했지만(혹은 고려전기의 형식적 외교관계로 복귀) 1359년 흥

89) 『高麗史』卷114, 列傳27 吳仁澤.

90) 『高麗史』卷126, 列傳39 李仁任.

91) 기황후 세력의 공민왕 폐위시도에서 보이는 양상들을 포함, 1356년 개혁 이후의 고려-몽골 관계를 이른바 ‘원간섭기’ 양자관계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점들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최중석, 앞의 논문(2010(c)).

92) 이상 공민왕 폐위사건과 이전 중조사건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앞의 논문(2010), 15-17면 참조.

건적의 침입으로 수세에 몰린 고려가 몽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몽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면서 기존의 양자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공민왕 폐위사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⁹³⁾ 하지만 이것은 양자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세력’의 측면과 ‘질서’의 측면 가운데 ‘세력’의 측면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양자관계의 전체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결과로 이것이 당시 고려-몽골(원)관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56년의 개혁을 통해 고려-몽골(원) 관계가 세력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⁹⁴⁾ 그 결과 이전처럼 몽골(원)이 직접, 혹은 그 세력에 기댄 이른바 ‘부원배’들이 고려군주권에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황제권이 고려국왕권 위에, 그리고 내부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양국간-양자간의 ‘질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력’면에서 다시 변동이 생겨난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는 이전과 유사한 힘을 가지고 다시 고려군주권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공민왕폐위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서 양자간의 ‘세력’관계가 분명히 변화했음을 내외에 확실히 했지만 이후에도 양자간의 ‘질서’는 또다른 맥락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외교관계에서 ‘질서’는 국가간, 군주간의 위계질서로 외교문서서식이나 의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⁹⁵⁾ 이러한 ‘질서’는 상위권위의 물리적인 힘, ‘세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세력’은 ‘질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를 가지고 작용할 수 있다.⁹⁶⁾ 고려-몽골(원) 관계는 양자간의 ‘질서’가 몽골의 절대적인 힘, 강제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용하며 양자간의 실질적인 ‘混一’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 고려의 외교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1356년 이후가 되면 양국간, 양자간의 이러한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지되는 강압적인 ‘질서’는 아니었다. 명 건국 이후, 나아가 조선 건국

93) 민현구, 2004 『新主(德興君)와 舊君(恭愍王)의 대결 : 元의 국왕폐립 획책에 대한 고려의 군사적 대응』 『고려정치사론』, 고려대학교출판부.

94)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이야기된 바와 같이 공민왕의 ‘도발’에 대해 몽골(원)은 ‘마땅한 응징’을 하지 못했고 공민왕의 여러 가지 요구들도 그대로 수용했다. 또한 살패본 바와 같이 1362년의 공민왕 폐위사건에서도 그러한 ‘세력’의 변화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95) 森平雅彦, 2007 『牒と咨の間: 高麗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 『史淵』144; 정동훈, 2009 「고려-명 외교문서 서식과 왕래방식의 성립과 배경」,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최종석, 2010(b)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51.

96) ‘세력’은 그 부침이 상황 변화에 따라 상당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질서’는 일단 추상적인 ‘인식’이나 구체적인 ‘의례’의 측면에서 형성, 교착되고 나면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만 외형적으로 그러한 ‘질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양자간에 유지되었던 이 ‘질서’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강제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논리에 의해 유지된 측면이 강했다.⁹⁷⁾ 1356년 개혁 이후에도 양자간, 양국간에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나아가 그러한 상황이 明이 건국하고 조선이 건국한 뒤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 한가지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힘에 의해 그러한 ‘질서’가 강제되었던 몽골제국기라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강렬한 기억 내지는 관성에 의해 지속된 측면이다. 또 한가지는 전자가 가져온 내부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몽골제국기에 형성되고 인식된 황제권에 대한 고려군주권의 실질적인 상대성을 국왕 뿐 아니라 모든 신민들이 인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려 혹은 조선 신민들의 ‘군주관’이 변화한 결과이기도 했다.⁹⁸⁾

이러한 개혁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공민왕의 ‘지향’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당시 불안했던 공민왕의 세력기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공민왕의 세력기반은 크게 두 부류, 수종공신을 주축으로 한 측근세력과 ‘개혁관료’라 할 수 있는 유신세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민왕은 즉위 초,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람을 쓰라.”는 보우의 조언에 대해 “간사하고 정의로운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들이 원에서 시중하면서 힘을 썼기 때문에 경솔히 물리치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⁹⁹⁾ 공민왕은 즉위 초, 몽골제국기를 통해 ‘私事化’한 정치의 ‘公共性’ 회복을 지향하면서도¹⁰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쳐야 할 “간사한 자”들인 측근세력을 안고 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민왕이 이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고려의 정규군이 사실상 ‘私兵化’한 상황에서¹⁰¹⁾ 군주권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무력, 즉 군사적인 측면을 이들 측근세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측근세력 대부분이 고위무관직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¹⁰²⁾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일신이나 이후 김용의 경우를 볼 때 이들 측근세력의 공민왕에 대한 충성도는 상당히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질서에 매우 익숙했던 이들에게 고려국왕-공민왕은 ‘현재’ 권력을 행사하기

97) 최종석, 2010(a)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회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52, 물론, 1356년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1356년 이후에도 가까이서 1362년의 공민왕 폐위사건, 조금 더 나아가서는 明 건국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던 양자간의 ‘질서’는 아직까지 ‘세력’에 의해 강제되던 몽골제국기적인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완전히 변화한 단계는 아니며 과도기적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8) 이와 관련해서는 별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99) 『高麗史』卷38, 恭愍王 元年 5月 己卯.

100) 김영수, 1997 「고려 공민왕대 초반기의 개혁정치와 반개혁정치의 대립」 『한국정치연구』6.

101) 송인주, 1991 「공민왕대 군제개혁의 실태와 그 한계」 『한국중세사연구』5.

102) 홍영의, 1990 「공민왕 초기 개혁정치와 정치세력의 추이(하)」 『사학연구』43:44.

위해 그에 충성하지만 언제든지 몽골의 권위에 기반해 교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이들의 공민왕에의 충성은 명분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 효용성에 기반한 것이었고 고려국왕권보다는 몽골황제권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그들에 의존해야 했던 공민왕의 군주권은 매우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러한 측근세력도 원년의 난으로 주축인 조일신 세력이 숙청당하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기존에 고려군주권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몽골의 권위’를 배제해야 하는 공민왕으로서는 정치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지지기반 확대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공민왕은 정치노선에서 유신세력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측면이 있었다. 정치의 ‘공공성’ 회복 추구라는 점에서 공민왕의 정치노선과 유신세력들의 그것은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그를 통해 지향하는 바에서 양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공민왕은 정치의 ‘공공성’ 회복 자체를 목표로 했다가보다는 그를 통해 군주권의 공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아직 군주권의 공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민왕은 정치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지향과 상반되는 존재인 측근세력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체현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관료’들의 문제의식은 ‘군주권’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공민왕이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측근세력을 이들은 포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관료체제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정상화를 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오히려 국왕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공민왕과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¹⁰³⁾ ‘고려군주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몽골(원)과의 관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기 어려웠다. 당시 상황에서 군주권 확립은 몽골(원)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유신세력들에게서 몽골(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¹⁰⁴⁾

이처럼 공민왕은 내부적으로 자신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세력기반도,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세력기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씨일가의 부상 및 기철의 난 소식 등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개혁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몽골(원)은 당장 군사력을 동원해 고려를 응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퇴로를 마련해주었다. 공민왕의 ‘도발’을 ‘반역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공민왕이 자신의 애초 지향을 완벽하게 결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몽골(원)이 제안한

103) 공민왕 초,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개혁관료들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최연식, 앞의 논문(1995); 이익주, 앞의 논문(1996), 226-228면 참조. 고려왕실의 정통성, 신성성을 강조하는 요소로서 기능했던 ‘왕씨 용손설’과 관련, 이체현이 ‘高麗世系’에서 그 허구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104) 최연식, 위의 논문(1995); 이익주, 위의 논문(1996), 226-228면; 채웅석, 2003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49.

퇴로를 선택하지 말아야 했겠지만 그것은 전면전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 고려의 전력, 공민왕의 세력기반으로서는 강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몽골(원)이 쇠퇴했고 토포 실각 이후 공민왕이 나름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양자가 실제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웠다.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결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내부적, 외부적 조건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혁을 둘러싼 공민왕의 지향과 결과는 결국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이상 공민왕이 즉위 후 단행했던 일련의 개혁들, 특히 1356년(공민왕 5)의 개혁을 중심으로 공민왕 초 군주권 재구축시도가 어떤 맥락에서 발단되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귀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1340년 기황후의 제2황후 책봉과 태자 아유르시리다라의 존재를 통해 고려사의 전면에 등장한 기씨일가는 몽골제국 아래의 고려·고려인들에게 고려왕실-왕씨일가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가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고려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공민왕대 초반에는 국왕과 '대등한' 정도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몽골이 상대방을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 혹은 '부족'으로서 뿐 아니라 하나의 '가문'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대표적 형태가 통혼이었으며 고려와 고려왕실 역시 통혼을 통해 몽골, 몽골왕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황후와 황태자의 존재, 그리고 그에 기반한 기씨일가의 존재는 고려의 왕씨일가와 몽골왕실 간에 성립, 유지되었던 양국관계의 구도에 또하나의 가문이 개입된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민왕의 고려국왕위가 다른 고려출신 가문인 기씨일가의 힘과 권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득세는 공민왕의 군주권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었다.

1356년의 개혁은 기씨일가를 통해 부각된 상대화한 고려왕실의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혁으로 '반원·자주적 역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출, 혹은 그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반원-몽골과의 관계재편'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고려왕실의 상대화는 몽골의 질서 속에서 이

루어진 것이었으며 이미 일체화한 몽골황실과 기씨일가의 ‘관계’는 공민왕이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민왕이 군주권 구축을 위해 선택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 이후 고려국왕들은 몽골의 질서 속에서 그 정점인 몽골황실에 가장 근접해 있던 고려국왕의 최고권으로서의 위상과 상징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변발·호복을 선택했다. 하지만 몽골의 질서에서는 오히려 고려왕실보다 우위에 있었던 기씨일가의 등장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려왕실·고려국왕의 최고권을 신민에 확인시킬 수 없게 된 공민왕은 변발과 호복을 해제했다. 또한 그간 고려군주권의 상당부분을 구성해 온 몽골의 권위에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민왕은 그에 대신하여 다른 가문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체의 질서인 태조의 권위에 기대어 군주권 재구축을 시도했다. 이러한 공민왕의 행위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반원·자주적 역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출, 혹은 그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고려-몽골 관계가 특히 고려군주권과 관련해 실질적인 ‘混一’의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混一’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양자관계를 부정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반원’ 지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1356년 개혁에서의 여러 조치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공민왕의 ‘지향’은 그러나 내부적, 외부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하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혁 이후 양국관계, 다른 한편으로 몽골황제권과 고려군주권 사이의 관계는 힘, 세력 면에서 변화된 양상과 질서 면에서 지속된 양상을 함께 보인다. 이는 1362년 기황후세력의 공민왕 폐위시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과 고려의 관계는 몽골의 절대적인 ‘힘’, ‘강제력’을 통해 양자간에 실질적인 ‘混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前後 고려와 여타 중국왕조간 관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개혁 이후 양국관계는 몽골과 고려가 여전히 일정부분 ‘混一’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전기의 형식적 외교관계로의 복귀가 아님과 동시에, 그런 ‘混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던 몽골의 세력, 힘의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世祖舊制’ 단계 양국관계로의 복귀도 아닌, 새로운 단계로의 변이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려군주권, 공민왕, 기씨일가, 반원개혁, 변발·호복 해제, 태조·국속 강조

투고일(2011. 1. 19), 심사시작일(2011. 1. 26), 심사완료일(2011. 2. 27)

<Abstract>

Trials to reconstruct the authority of Koryeo kingship early in king Gongmin's reign and the Ki family : around the reforms in 1356

Lee, Myungmi *

The Ki family, appeare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empress Ki in 1340 and the presence of the crown prince, strengthened their political grip and grew up as 'equal' as the Koryeo king early in king Gongmin's reign. The Mongols had a tendency to recognize an object as a 'family' as well as a 'nation' or 'tribe' in shaping a 'relation' with other political unit, and the representative form of such a 'relation' was intermarriage. Thus the advent of the Ki family may be said as an aspect that another family intervened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Koryeo royal family and the Mongol imperial family. Series of political actions early in King Gongmin's reign including the reforms in 1356 begun from a critical mind on the 'status of the relativized Koryeo royal family' emphasized through the Ki family. It wasn't done based on 'Anti-Yuan(反元)·autonomous historical consciousness' but eventually it showed 'Anti-Yuan orientation' intending to escape from the state of 'unification(混一)' in Koryeo kingship. However, King Gongmin's such 'orientation' couldn't get a complete 'result' in the situation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weren't backed up. The Mongol-Koryeo relations after the reforms can not be said to return to the formal diplomatic relations of the early Koryeo, and also to the step of 'Sejogujae(世祖舊制)'. It may be said as a transition to the new phase.

Key Words : Koryeo Kingship, King Gongmin, Ki family, anti-Yuan reforms, Removal of the Chinese queue·garment(辮髮·胡服), Emphasis of Taejo(太祖).

* Researcher,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